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서

위탁자: _____

수익자: 위탁자의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신탁관리인: _____

자산관리기관: _____ 유안타증권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유안타증권 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05-030-5호,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위탁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이 제도에 가입한 수익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금전을 신탁(이하 "이 신탁"이라 합니다)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라 함은 연금규약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이 계약의 수익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과반수를 말합니다.
 -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에 근거하여 위탁자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근거하여 위탁자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자산관리업무)

이 계약에 의해 수탁자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 급여의 지급
-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제 4 조 (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금)

- 위탁자는 이 계약서의 작성 및 금전의 신탁을 통해 이 계약을 체결하며,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금전을 신탁하기로 합니다.
-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기존 퇴직금 사내유보금의 이전, 퇴직일시금전(퇴직보험 포함)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등으로 인해 이전되는 금전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 5 조 (신탁기간)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중도해지일,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전부 이전일,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신탁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 6 조 (수익자)

-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해당 연금에 개별관리자산이 있는 자에 한함)로 합니다.
-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합니다.

제 7 조 (신탁관리인)

- 신탁관리인은 수익자를 대표하며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 합니다.
 - 수익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 수익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
- 위탁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및 사용자측은 신탁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위탁자는 신탁관리인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연금규약의 제출 및 변경)

- 위탁자는 수탁자가 자산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신고·수리된 연

- 금규약 및 노동부의 신고·수리 확인서류를 이 계약 체결 시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변경할 내용을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변경 후에는 자체 없이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된 연금규약을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사실의 통지 지연 및 연금규약의 제출지연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제 9 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 위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지정변경·취소의 경우에 그 내용을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탁자는 제1항의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하 "통지 등"이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운용관리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합니다.

제 10 조 (신탁재산의 운용)

-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법령 및 연금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하면 운용관리기관은 운용지시를 수탁자에게 전달하고,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서 제2항의 운용지시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에 대해서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제 11 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신탁재산의 예탁 및 보관)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예탁결제원 등에 예탁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신탁금의 지급)

-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한운용지시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의 지급은 수익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수탁자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은 수수료 및 퇴직소득세 등 지급과 관련된 모든 제세공과금의 징수절차가 완료된 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신탁원본)

이 신탁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초 신탁금을 신탁원본으로 하고,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추가수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에 가산하고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금의 지급,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 제23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제 15 조 (신탁재산의 표시)

이 계약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및 신탁의 표시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세금, 사무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부족으로 인해 세금 및 기타 사무비용 등의 징수가 불가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자산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는 부속합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구합니다.

제 18 조 (중도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업장의 합병, 분할, 영업양수로 인하여 위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의 경우
 3.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변경의 통지에 대해 위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5. 수탁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위탁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는 경우
 2.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중요부분에 대한 기재내용상 거짓이 있는 경우
 3. 위탁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 19 조 (수탁자의 사임)

- ① 수탁자는 수탁행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위탁자와 신탁관리인의 승낙 없이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 ③ 수탁자가 사임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는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수탁자가 사임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관리인의 입회 하에 신탁재산을 새로운 수탁자(또는 자산관리기관)에게 이전하고 사무의 인계를 합니다. 다만, 수탁자의 사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0 조 (신탁계약의 이전)

- ① 위탁자는 신탁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의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을 계약이전을 받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계약이전을 위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연금규약 및 동의확인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관리인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⑤ 제4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제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⑥ 제2조제1항제8호의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 (신탁의 종료)

- ① 이 신탁은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자가 모든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신탁관리인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종 제세공과금의 징수절차가 완료된 후에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면 종료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 22 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천재지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및 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의 폐쇄, 정지, 휴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자, 운용관리기관 및 신탁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신탁재산의 반환)

-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위탁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제 24 조 (일부 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업무 수행)

- ① 위탁자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중도해지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의 이전을 신청한 이후에도 이 계약의 수익자가 일부 존속하는 경우 이 신탁은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수탁자는 존속하는 수익자에 대해 신탁재산의 관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며, 이 신탁이 종료될 때까지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25 조 (계약의 승계)

위탁자는 수탁자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자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26 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퇴직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7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이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가지고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29 조 (인감신고)

- ①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약용 인감 및 신탁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날인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신고사항)

위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절차를 거쳐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중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및 신탁관리인의 주소,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1 조 (면책)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이 신탁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사용된 인감을 이미 제출된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 신탁사무의 처리
2. 이 계약에 근거한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의 지시, 청구, 통지, 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신탁사무의 처리
3.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의 처리
4.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신탁 목적상 수탁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가 불가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한 금액이 관련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 다른 경우
7. 위탁자가 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일을 초과하여 금전을 신탁한 경우

제 32 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위탁자는 변경통지일로부터 1년간 기존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 계약을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이전하거나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법 기타 관련법령이나 감독규정에서 변경한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33 조 (부속합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 ① 부속합정서에는 이 계약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부속합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 34 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신탁업법, 관련법규 및 수탁자 내규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 35 조 (관할법원)

위탁자,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수탁자의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협의)

이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제 37 조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서를 3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이 기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제 38 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위탁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위탁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위탁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 39 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 ① 2013년 2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할인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의 경우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5년 2월 1일 개정 시행되는 자산관리계약 부속합정서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2024년 1월말 기준 회사와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경우, 회사가 이 계약의 수수료 할인 적용 가능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할인 적용이 가능한 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증빙서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을 이 계약서의 시행일로 하여 증빙서류없이 할인을 적용합니다.
- ③ 2025년 2월 1일 개정 시행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은 2024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주소) :

(성명) : (인)

수탁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LO CHIH PENG (인)

신탁관리인(주소) :

(성명) : (인)

[부속협정서]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유안타증권 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05-030-5호,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위탁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 기초하여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체결한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 1 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

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 2 조 (수수료의 징구)

① 제1조의 수수료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조의 수수료의 징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

가. 납입주체 : 위탁자

나. 계산기준일 : 위탁자의 매년 사업연도 말일

다. 징구 방법 : 매년 계산기준일로부터 1달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입안내를 통해 별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에서 납입 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서 징수합니다.

라. 계산방법 : 계약일 또는 직전계산기준일 익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까지의 신탁재산 평가액 평균잔액(이하 "신탁재산 평잔"이라 합니다.)에 다음의 수수료율을 제차 적용하여 계산

신탁재산 평잔	수수료율	수수료 산출 예시
30억원 이하	0.19%	적립금 규모 700억원 가정시 자산관리수수료 = 30억 × 0.19%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15%	+ (500억 - 30억) × 0.15%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0.11%	+ (700억 - 500억) × 0.11%
1,000억원 초과	0.08%	

마.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21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일을 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자산관리수수료를 취득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계약일 또는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익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바. '라'목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결과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중도해지일까지 발생한 경과 수수료에 대한 장기할인은 제외됩니다.)

계약연수	할인율
2차년도 ~ 4차년도	10%
5차년도 ~ 9차년도	12%
10차년도 이후	15%

2. 제2항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3. 제2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한 결과 그 금액이 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자산관리수수료

제2항의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할인율을 적용한 수수료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신탁재산 평잔	중소기업 (할인율 10%)	사회적기업 (할인율 80%)
30억원 이하	0.17%	0.04%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14%	0.03%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0.10%	0.02%
1,000억원 초과	0.07%	0.02%

③ 제2항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하기로 합니다.

④ 제2항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금액이 1,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⑤ 사회적기업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익영업일부터 자산관리수수료율을 10% 할인 한 제2항 제4호의 자산관리수수료를 적용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

우에는 익영업일부터 자산관리수수료율을 80% 할인한 제2항 제4호의 자산관리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제2항의 제1호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당사의 여타 기업 대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의 만료, 취소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제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대기업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인증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24년 4월 1일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회사가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증빙서류 제출에 의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제 3 조 (운용지시가 없는 현금자산의 운용)

계약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지시의 통보가 없는 현금자산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은 은행예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순서로 운용합니다.

제 4 조 (신탁금의 지급기일 및 반환기일)

- 계약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기일 및 계약서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의 반환기일은 운용방법별 환매일정을 감안하여 적용합니다.
-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방법별 지급기일 또는 반환기일(이하 "지급기일 등" 이라 합니다)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 지급기일 등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종 지급기일 등 이전에 현금화가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5 조 (부속협정서 내용의 변경)

위탁자 및 신탁관리인과 수탁자가 필요에 의해 이미 협의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부속협정서의 내용은 새로 체결되는 부속협정서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제 6 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부속협정서를 3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주소) :

(성명) :

(인)

수탁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LO CHIH PENG

(인)

신탁관리인(주소) :

(성명) :

(인)